



통상 News Brief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SHIN & KIM International Trade Law Center

2021 Vol. 4

Contents

동향분석 미중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	03
--------------------------------	----

이슈진단

유럽과 미국의 CBAM 논의 동향	08
------------------------------	----

OECD 디지털세 논의와 국제통상법적 고려사항	12
-------------------------------------	----

1분기 주요 통상뉴스	15
-----------------------	----



동향분석

미중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¹

지난 18-19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벌인 험악한 설전은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여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신장, 티베트, 홍콩 등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두 나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 디커플링은 2010년대 중반 중국정부가 공세적 산업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국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가 취해졌고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¹ 본고는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공급사슬 세계화 퇴조하고 지역 블록화 진행된다”는 제목으로 2021.04.06.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올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3월 발표한 예비 국가안보전략 안내서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도 정교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의 경쟁으로 규정하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이 중국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미국 디커플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자주적 혁신으로 세계최고 도전

미중 디커플링은 미국의 공격에 중국이 반격하면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원인은 중국이 제공했습니다. 2006년 중국이 발표한 ‘중장기 과학기술 개발계획’이 디커플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자주적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경제를 기술강국으로 만들고 2050년에는 세계를 리드하는 사회주의 최강국으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위 ‘자주적 혁신’이란 외국기술을 모방하거나 흡수하거나 개선하여 이를 중국 기술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활동에 중국정부가 적극 관여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후 중국정부가 자주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제도, 제품검사 및 승인제도, 공정거래심사, 정부조달, 기술표준을 불공정하게 운용하고, 외국인투자시 중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제조 2025’가 공표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차세대 통신기술 등 10개 전략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중국산업을 세계 최고로 올려서도록 한다는 공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격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 미국은 미국의 공급사슬에서 중국기업을 배제하는 조치로 맞섰습니다. ZTE, 화웨이 등에 미국 반도체 공급을 중단시켰고, 틱톡과 위챗 앱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종료를 몇 주 앞둔 작년 12월 중순,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기업 SMIC와 세계최대 드론업체 DJI 등 60개 중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바이든, 공급사슬 재편 작업으로 견제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사슬 재편작업을 좀더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향후 100일간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희귀광물,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의 공급사슬 현황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연방기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또한 국방, 공중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업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한 공급사슬 현황을 1년간 조사, 보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디커플링 조치에 대해 중국은 반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 쌍순환’을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과의 디커플링 등 외부환경 변화에 맞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국내경제의 대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또 다른 반격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조치에 동조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2020년 9월 공포한 “불신기관 목록” 규정은 중국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중국과의 수출입, 중국내 투자, 관련자들의 중국입국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추가로 제3국 기업이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면 그 제3국 기업에 대해 중국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응조치들은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경우 제3국 기업들은 중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 미국 편에 서든지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중 디커플링, 어디까지 확대될까

우선 대상분야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전략분야로 지정한 산업들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사슬 현황검토를 명령한 다른 산업들로 미중 디커플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의도하는대로 미중 디커플링이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의 대립으로 발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국들이 미국 진영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유럽연합(EU)도 큰 틀에서 미국에 동조할 가능성이 큼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군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별 또는 산업별로 처한 여건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들간에 다양한 대립 또는 협력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산되는 미중 디커플링을 저지할 국제법적 장치는 없을까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가 세계 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WTO 규범으로 양국의 디커플링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불완전한 WTO 통상규범과 미비한 분쟁 해결절차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자 탈동조화 조치를 취하는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예비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경제적 안보(economic security)가 곧 국가안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안보개념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국제법적 룰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가 WTO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는 안보상 조치를 WTO규범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사국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안보예외를 선언하기만 하면 그런 조치는 아예 WTO 분쟁해결절차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국의 디커플링 대응조치를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막상 자국의 조치가 WTO에 제소되면 미국처럼 안보예외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해 공급사슬의 세계화가 퇴조하고 지역화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이 재구축하고 있는 공급사슬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중 디커플링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든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과 중국의 제재와 보복조치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커플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수출통제조치,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와 같은 개별기업 제재, 공급사슬 재편과 관련된 조치들을 면밀히 추적, 관찰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디커플링 조치들이 기업 및 공급자들에 미치는 현재적, 잠재적 영향을 경영 및 투자전략에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와 무역 측면에서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분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간 디커플링으로 경제가 정치화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간 정보공유와 총체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슈진단

유럽과 미국의 CBAM 논의 동향

1. EU에서의 논의

2019년 12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습니다. EU의 그린딜에는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강화 및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CBAM의 형태와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EU가 생각하는 CBAM의 구체적인 모습은 2021년 상반기에 드러날 예정이지만, CBAM을 구성하는 주요 골격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EU CBAM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어떠한 형태로 CBAM이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합니다. 세금의 형태, 아니면 기타 다른 방식으로 탄소의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VAT)로 부과할 것인지 관세(imported tax)로 부과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EU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CBAM 도입을 위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 협의에서는 4가지 정책옵션이 거론되었는데, 첫째, 관세(imported tax)의 도입, 둘째,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의 확대, 셋째, 수입품 전용 ETS의 신설, 넷째,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부과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EU ETS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을 요합니다.²

² DIW Berlin, Border Carbon Adjustments and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EU ETS: An Evaluation

또한 CBAM이 세금이나 기타 다른 방식-EU ETS의 활용-으로 도입되더라도 어떤 산업을 포함시킬 것인지, 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용대상 산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EU 집행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철강, 시멘트, 전기를 대상으로 하고, 향후 알루미늄, 비료, 화학으로 CBAM을 확대할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³ 2021년 3월 유럽의회는 CBAM은 현재 개정 중인 EU ETS와 연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까지 발전 부문과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산업분야인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화학, 유리, 제지, 정유 및 비료가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⁴

나아가 원자재(basic materials), 중간재(semi-manufactured), 최종재(final product) 등 어떤 상품에 CBAM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품 생산시 직접 발생하는 탄소에만 CBAM이 적용될 것인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해당 상품의 전체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나 운송시에도 발생하는 탄소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의 논의동향

미국도 바이든행정부의 출범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2050년까지 탄소제로경제(net zero economy)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후보자 시절에는 탄소집중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조정 수수료나 쿼터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3월 USTR에서 발간된 2021년 정책 어젠다(Policy Agenda)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거래시스템에서 시장과 규제적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필요시 국내적 접근과 합치하는 탄소국경조정을 고려중임을 언급하였습니다.⁵ 특히 미국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세계 40개국을 초청하는 기후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개최할 예정

³ <https://www.reuters.com/article/climate-change-eu-carbon/eu-eying-carbon-border-fees-plan-for-steel-cement-and-power-senior-official-idINL4N2H43OL>

⁴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10304IPR99208/meps-put-a-carbon-price-on-certain-eu-imports-to-raise-global-climate-ambition>

⁵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Trade%20Agenda/Online%20PDF%202021%20Trade%20Policy%20Agenda%20and%202020%20Annual%20Report.pdf>

입니다.⁶ 해당 회의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감축 목표가 언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EU는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⁷

2021년 3월 기준,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탄소 가격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탄소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system)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북동부 11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가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산업, 발전, 운송 및 빌딩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괄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탄소배출의 85%에 달하는 수준으로 현재 톤당 가격은 18달러 수준입니다. 오레곤 주에서도 2022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 RGGI는 전기발생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2009년 시작된 자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 톤당 6달러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EU처럼 정책입안 단계는 아니지만 연구단계에서는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 세부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 일종의 오염수수료(pollution fee)인 온실가스세(Upstream GHG Tax)도입을 위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 제도를 WTO 규정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톤당 상품 생산에 소모된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나타내는 온실가스 기준(greenhouse gas index, GGI) 도입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GGI는 화석 자원으로 생산된 탄소내용물의 기여와 제조자의 온실가스 배출과정 및 전기, 연료 등 구입한 제품에서 발생한 배출을 모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상당히 광범위한 배출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CBAM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도 탄소국경제 도입을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으며⁸, 영국은 6월에 개최될 G7 회의에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es)논의를 진행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⁹ 11월 개최예정인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⁶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26/president-biden-invites-40-world-leaders-to-leaders-summit-on-climate/>

⁷ <https://www.reuters.com/article/us-climate-change-eu-usa/this-must-be-the-decade-of-action-on-climate-change-john-kerry-says-idUSKBN2B11XQ>

⁸ <https://budget.gc.ca/fes-eea/2020/report-rapport/FES-EEA-eng.pdf>

⁹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u-k-wants-world-to-talk-about-carbon-border-taxes-this-year?utm_source=rss&utm_medium=DINW&utm_campaign=00000177-9134-d623-a177-9ff5580d0001

특히 이번 G7 회의에 참석하게 될 호주는 CBAM 도입보다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상품들의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처럼 무역자유화 방식으로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¹⁰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방안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¹⁰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liberalisation-not-protectionist-australia-to-fight-eu-s-carbon-tariffs-with-its-own-plan-20210311-p579v9.html>

이슈진단

OECD 디지털세 논의와 국제통상법적 고려사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디지털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¹¹에서는 137개국이 참여하여 국제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세 논의가 기존의 합의기한인 2021년 중반내에 다자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두 가지 방안 - 필라(Pillar) 1과 필라(Pillar) 2 -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필라 1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사업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기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비자가 있는 시장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라 2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12.5% 수준으로 설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¹¹ 소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라고 불리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의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OECD에서 논의 중인 최저한세를 21%로 인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자적 차원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호주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부 국가들이 도입한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프랑스를 시작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호주,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에 대하여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¹² 한국은 아직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OECD의 움직임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OECD에서도 디지털세에 대한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일방적인 디지털세가 전세계에 도입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년 전세계 GDP의 1%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¹³

디지털세 또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해서는 통상법적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세는 WTO GATS상의 비차별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연구와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만¹⁴, FTA 차원에서 분석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의 디지털세 도입과 부과에 대해서는 GATT/WTO협정과의 합치성뿐만 아니라, 한미 FTA 규정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USTR이 2021년 3월에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세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서비스 챕터 뿐만 아니라 투자챕터, 전자상거래챕터 등 관련 챕터의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미 FTA에는 기존 GATT/WTO협정에는 없었던 과세 조항(taxation)을 두고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¹² Inside US Trade, USTR mulls tariffs on goods from six countries in response to digital services taxes, March 26, 2021.

¹³ <https://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community-renews-commitment-to-address-tax-challenges-from-digitalisation-of-the-economy.htm>

¹⁴ Andrew D Mitchell, Tania Voon & Jarrod Hepburn, 'Taxing Tech: Risks of an Australian Digital Services Tax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9)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Gary Clyde Hufbauer and Zhiyao (Lucy) Lu, The European Union's Proposed Digital Services Tax: A De Facto Tarif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June 2018); 'US Groups Claim European Digital Tax Proposals Violate GATS Commitments' (1 November 2018) Inside US Trade (online)

한미 FTA 제23.3조 과세 조항은 7개의 항으로 구성된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된 조문입니다. 이는 한-EU FTA 제15.7조 과세 조항이 4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대비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조치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이 한-미 FTA보다 우선적용됩니다(제2항). 따라서 디지털세에 대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조세협약이 체결된다면 해당 협약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1976년 양자조세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협약이 디지털세와 같이 새로운 세금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 FTA 과세 조항에서는 서비스 챕터와 투자 및 금융서비스 챕터상의 비차별원칙-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 원칙-은 소득, 자본소득, 기업의 과세대상 자본계정, 부동산, 상속, 증여, 격세 양도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 모든 과세 조치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항 (b)호). 특히 서비스 챕터 및 금융서비스 챕터상의 내국민대우원칙(제12.2조 및 제13.2조)과 금융서비스 챕터에 포함된 국경간 무역(Cross-Border Trade) 규정상의 내국민원칙(제13.5.1조)은 특정 서비스의 소비나 구매와 관련된 소득, 자본소득, 기업의 과세대상 자본계정에 대한 과세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항 (a)호). 다시 말해,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챕터상의 내국민대우원칙이 소득, 자본소득, 기업의 과세대상 자본계정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부과하기로 한다면 해당 디지털세가 한미 FTA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챕터에 규율되어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디지털세 부과가 같은 상황에서(in like circumstances) 한국의 디지털기업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s)를 미국의 디지털기업에게 부여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상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도 제4항에 제시된 6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¹⁵

¹⁵ 언급된 6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조세협약에 따라 일방 당사국이 부여하는 최혜국 의무, ii)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iii)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iv)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v)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vi)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1분기 주요 통상뉴스

(2021.01.01. – 2021.03.20.)

한국, CPTPP 가입 적극검토 발표 (01.12.)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올해 안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을 4대 통상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제도 개선 방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로, 전세계 GDP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발효되었다. EU와 결별한 영국은 2월 1일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하였다.

[Key word] #CPTPP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공식출범 (01. 20.)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2021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였다. 조 바이든 해리스 대통령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였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 없이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핵심 국정과제나 시급한 이슈를 처리할 때 활용된다.

17개의 행정명령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이전 정부의 이민정책을 수정하는 내용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정책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Agreement)에의 복귀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Key word] #바이든 #제46대_미대통령 #행정명령 #코로나-19 #기후변화 #WHO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문 원칙적 합의, 협정문 일부 공개 (01.22.)

2020년 12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문(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CIA)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였다. 2021년 1월 22일에는 해당 협정문 일부가 공개되었다. CIA는 시장접근, 공정한 경쟁의 장,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EU는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많은 분야의 시장을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CIA 제조업, 자동차, 금융서비스, 보건,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통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국제 해상운송, 항공운송관련 서비스, 기업 서비스, 환경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의 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소유 기업을 제한하고, 서비스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술의 강제 이전을 금지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강제 노동 및 관련 ILO 핵심협약들을 비준할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개발 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분쟁해결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럽정상들이 CIA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해당 협정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Key word] #EU #중국 #CIA #포괄적투자협정문 #시장접근 #공정한_경쟁의_장
#지속가능한_개발

2021년 WTO E-Commerce 협상 진행 (02.05. / 03.16.)

현재 8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무역관련 전자상거래 협상의 통합된 협상문이 2020년 12월 공개되었다. 통합협상문은 협상 참여국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내용을 취합, 정리한 문서로 동 협상문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 2021년 2월에 개시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소위 스팸메시지(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메시지)에 대한 협상문안이 도출되었다. 나아가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에서도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전자상거래 활성화(enabling e-commerce), 개방과 전자상거래(openness and e-commerce), 신뢰와 전자상거래(trust and e-commerce),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 통신 및 시장접근의 6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와 남아공은 전자상거래협상을 포함한 복수국간무역협정이 WTO 규범과 원칙에 합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복수국간무역협정은 반드시 WTO 회원국 전체의 동의절차를 거쳐 WTO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Key word] #전자상거래협상 #E-Commerce #정보기술협정 #복수국간무역협정

WTO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02.15.) 및 공식취임(03.01.)

WTO 일반이사회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킨조-웨이알라를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2월 5일 바이든 행정부가 오킨조-웨이알라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지 며칠만에 이루어졌다. 오킨조-웨이알라는 세계은행 사무총장, 나이지리아 재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WTO에서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공식 활동은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오킨조-웨이알라는 취임사에서 결과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WTO가 현실세계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제시하였다. 첫째, WTO가 팬데믹을 해결하는데 대처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공중보건 뿐만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두고 있다. 둘째, WTO에서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상소 기구의 회복을 포함한 분쟁해결 개혁을 언급하였다. 넷째, 농업과 관련하여 시장 개방, 국내 지원 및 기존의 의무사항 이슈들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다섯째,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 보조금과 특별하고 다른 대우에 대한 행동도 취해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Key word] #WTO사무총장 #응고지_오킨조-웨이알라 #코로나-19 #수산보조금 #분쟁해결개혁

바이든 대통령, 미국 공급사슬 행정명령 서명 (02.24.) / 예비 국가안보 전략 안내서 발표 (03.0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내 반도체, 제약, 전기차 배터리 및 필수광물 4가지부문의 공급사슬을 100일동안 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공급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나아가 행정명령은 1년 동안 6개의 산업 부문-방위산업, 공중보건 및 생물학적 준비(biological preparedness), 정보 통신, 에너지, 교통,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진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약 일주일 후에는 국무부 장관인 안토니 블링컨이 바이든 행정부의 예비 국가안보전략 안내서를 통해 8개의 우선순위를 발표하였다. 특히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과 국제경제정책이 소수의 특정그룹이 아닌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상정책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서 벗어나 미국 노동자와 미국 경제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산업의 미국내 공급을 늘리고 해외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Key word] #공급사슬 #반도체 #제약 #전기차 배터리 #필수광물 #국가안보전략 가이드선스

제12차 WTO 각료회의 11월 29일 제네바에서 개최 결정 (03.01.)

3월 1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일정이 결정되었다. 원래 제12차 각료회의는 2020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현재 상황으로는 2021년 6월 각료회의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제12차 각료회의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새로운 사무총장의 부임과 동시에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11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국 WTO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매 2년마다 1차례 이상 회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Key word #WTO각료회의 #제12차 WTO각료회의 #MC12

USTR 새로운 수장으로 캐서린 타이 임명 (03.17.)

캐서린 타이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USTR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되었다. 타이는 국무부 장관인 안토니 블링컨 및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worker-centered trade policy)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도 통상정책이 근로자의 임금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정책 개발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월 25일 진행된 의회청문회에서 타이는 취임 후 100일 안에 진행할 우선적인 통상정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해당 정책에는 팬데믹 관련 이슈부터 USMCA, WTO 개혁, EU, 중국,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통상이슈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것을 언급하였다. 둘째, USMCA의 이행과 집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USMCA는 통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담은 협정으로 동 협정에 담긴 노동집행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WTO 개혁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위기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불공평한 무역관행을 살펴볼 것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EU와는 항공기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중국과는 지난해 체결한 1단계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적극대응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동맹과 무역상대국과 협력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Key word #근로자중심 통상정책 #코로나-19 #USMCA #WTO #기후변화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

세종 국제통상법센터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에 시의성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속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법무법인(유)세종이 쌓아온 통상역량을 결집하여,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의 고객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구성원

센 터 장 김두식 (대표변호사)

고 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주일대사) | 백주현 (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러시아 경제참사관) |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김도열 (전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국제통상 전재민 (변호사) | 윤영원 (변호사) | 김재희 (변호사) | 이상협 (변호사) | 오미연 (캐나다, 미국변호사) | 박경진 (박사, 전문위원)

무역구제 강정수 (공인회계사) | 조명성 (공인회계사) | 오유창 (미국회계사) | 장슬기 (미국회계사) | 장유림 (영국회계사)

관 세 우도훈 (변호사) | 한정화 (관세사) | 정진용 (관세사)

연 락 처 02-316-4114 www.shinkim.com